

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7. 3. 1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13일 · 안재홍 의원 외 6인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3일
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운영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안 재 홍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에 의거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회의 연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

로 함(안 제2조)

-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(안 제3조 제1항)

다. 개정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(정례회), 제41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군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